



제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효인 공소제기의 공소시효 정지효력 제외〉

■ 박군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17호)

2026. 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현행 제도 개관	2
3.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6. 18.
3. 회 부 일: 2025.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사안임에도 재기소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의 경우, 원천적으로 시효 정지 효력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당초부터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도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해석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당초부터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도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第253條(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 時效는 <u>公訴의 提起</u> 로 進行이 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 違反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 ~ ④ (생략)	第253條(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 ----- <u>공소의 제기(공소 제기 당시부터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도 개관

가. 현행 제도 및 관련 판례 검토

1) 현행 제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의 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함. 또한,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범인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머무는 기간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¹⁾하고 있음.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하여,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판시²⁾하였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공소제기가 절차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거나 무

1)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효라고 할지라도 검사의 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장이 최초로 제출된 때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³⁾하였음.

3) 현행 법령의 해석상 쟁점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의 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의 경우에도 시효 정지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음.

가) 무효인 공소제기는 시효정지 효과가 없다는 견해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고 위법·무효인 공소제기에 시효 정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위법·무효인 공소제기로 인하여

3) 대전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204 판결

“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형식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공소기각의 사유를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공소 제기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상 그와 같은 제한을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② 학계에서도 강학상의 이른바 ‘형식적 소송계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가 부적법·무효인 경우에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인다. ③ 공소제기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정도의 중대한 형식적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자와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하자의 차이는 상대적 차이라고 보이고, 이로써 공소시효 정지 여부의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 . . ⑥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 . . 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와 대비하여 볼 때, 형사소송법은 이와 달리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법·무효인 공소 제기의 경우에도 일단 그 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등의 논거를 판결이유에 설시하였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인정하면, 검사의 위법한 공소제기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견해

나) 무효인 공소제기도 시효정지 효과가 있다는 견해

대법원도 검사의 서명·날인 누락 등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추완을 통하여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⁴⁾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경우까지 시효 정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라는 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시효 정지 효력을 부정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공소시효 완성 직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식적 하자로 인하여 재기소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형식적 소송계속이 있는 경우 공소가 부적법·무효인 경우에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

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3. 검토의견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법·무효인 공소제기의 시효 정지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공소 제기 당시부터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를 시효 정지 효력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공소 제기 당시부터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의 범위, 특히 “추완 가능한 형식적 하자의 경우” 당초부터 “무효 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그러므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민법 제170조⁵⁾와 같이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이 있는 경우 시효정지의 효력을 부정하되, 일정 추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제기의 무효’ 여부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수밖에 없어, 실무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시효 정지를 공소의 무효 여부와 연동시킬 경우,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부정되어 형사절차의 안정성과 시효제도의 기능을 훼손할

5)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우려가 있음.

또한, 무효인 공소제기 중 추완가능한 형식적 하자만 있는 경우에도 시효 정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일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공소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효를 기산하는 것이 아닌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 경과로 시효가 완성됨. 이는 민법상 공소시효 중단이 중단 사유가 소멸하면 중단 시점 이후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과 구별됨⁶⁾. 따라서 개정안 도입에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의 차이, 시효 정지와 중단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개정안에 대하여 공소 제기 당일부터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함으로써, 시효 정지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공소의 무효 여부는 사후적으로 확정되며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제한하면 예측 가능성과 형사절차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3

6) 신양균, 조기영,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2021년), 385면